

《핵심역량교육연구》 발행규정

2014년 11월 7일 제정

2016년 12월 1일 개정

2017년 7월 22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The Korea Association for Core Competency Education) 회칙 제4조 제2항(학회지 및 기타 연구 자료의 간행)에 규정된 학회지 편집 및 심사 등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회지명

본 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를 “핵심역량교육연구(The Journal of Core Competency Education Research)” 라고 칭한다.

제3조. 발간회수

본 회의 학회지는 연 2회 발간(6월30일, 12월30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 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제4조. 예산

본 회의 학회지 발간에 필요한 경비는 외부지원기금과 본 학회의 지원금 및 발표자의 논문 게재료로 충당한다.

제5조. 게재자격

본 회의 학회지에 논문 게재는 원칙적으로 회원(정회원, 학생회원 포함)에 한한다. 단, 회원과의 공동논문과 본 학회에서 특별기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 게재논문의 내용

본 회의 학회지는 핵심역량과 역량교육 분야의 연구논문, 서평, 자료 및 논평을 게재한다. 국내외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제7조. 논문의 투고

본 회의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본 학회지의 원고 작성 요령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제8조. 논문의 심사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각 투고 논문에 대한 논문 심사위원 위촉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논문 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규정에 맞게 원고가 작성되었는지를 먼저 심사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심사를 담당할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2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3) 논문 심사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4)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폐기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논문심사 의견을 토대로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 세 명의 심사위원이 모두 ‘게재 가’로 심사한 경우 그대로 게재한다.

(2) 한 명의 심사위원이라도 ‘수정 후 게재 가’로 심사한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가 수정사실을 확인하고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 1차 심사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한 명의 심사위원이라도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할 경우, ‘수정 후 재심사’ 의견이 최종 판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한하여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1차 심사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4) 최종 두 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로 심사한 경우 게재한다.

(5)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편집위원회가 정한 제출 기한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본 학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14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4) 투고논문이 본 학회지의 성격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논문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9조. 게재예정증명서

본 학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결과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